

# 학교법인 성광학원

(2023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)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12 인	2 인
재적임원	12 인	2 인
참석임원	11 인	2 인

- 일 시 : 2023년 5월 25일(목) 14:00 ~ 15:10(회의소집 통보일 : 2023년 5월 8일)
-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(삼평동 689) 차바이오컴플렉스 5층 회의실
- 임원 출·결사항
  - 참석 임원
    - 이사 11인 : 김한중, 김병수, 김승조, 김춘복, 정길생  
차원태, 김광중, 강일모, 장성구, 김동익, 지훈상
    - 감사 2인 : 원형태, 박동혁
  - 결석 임원 : 차광렬 이사
- 안 건
  - 제1호 : 교원 인사
  - 제2호 : 대학 학칙 및 규정 개정
  - 제3호 : 리스자금 한도계약 [부속병원]
  - 제4호 : 2022회계연도 결산(안)
  - 제5호 : 대표서명 임원 선출
- 회의 내용
  - 성원보고
    - 임종창 사무국장 : 이사 11명, 감사 2명이 참석하여였음을 설명 한 후 성원 보고를 하다.
    - 이사장 :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.
  - 개회기도
    - 김병수 이사 : 개회기도를 하다.
  - 전차이사회 회의록 확인
    - 이사장 : 전차이사회 회의록을 이미 개별적으로 우송해드렸으므로 낭독은 생략

서명	
----	--

할 것을 설명하고 전차이사회 회의록의 확정 여부를 묻다.

- 참석이사 전원 :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찬성하다.
- 이사장 : 전차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확정함을 선언하다.

(4) 업무보고

- 임종창 사무국장 : 전차이사회 안전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다.
- 김동익 총장 : 대학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다.

(5) 안전심의

안전 제1호 교원 인사

- 이사장 :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.
- 임종창 사무국장 : 안전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하다.
- 윤호 교무처장 : 교원 인사에 대하여 설명하다.
- 김병수 이사 : 본 안전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.
- 장성구 이사 : 재청하다.
- 이사장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교원 인사 : 내용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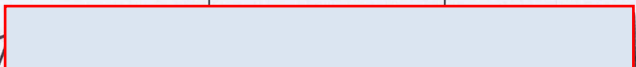
안전 제2호 대학 학칙 및 규정 개정

- 이사장 :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.
- 임종창 사무국장 : 안전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하다.
- 윤호 교무처장 : 학칙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.
- 정길생 이사 : 간호학과 배정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, 교원 인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.
- 김광중 이사 : 재청하다.
- 이사장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대학 학칙 및 규정 개정 : 내용 별첨

안전 제3호 리스자금 한도계약 (부속병원)

- 이사장 : 사무국장에게 안전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.
- 임종창 사무국장 : 안전을 상정하고 부속병원 재무팀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

서 명	
--------	--





(6) 폐회선언

- 이사장 : 다른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(한글 서명)

이사장	김 한 중	
	김 병 수	
	김 승 조	
	김 춘 복	
	정 길 생	
이사	차 원 태	
	김 광 중	
	강 일 모	
	장 성 구	
	김 동 익	
	지 훈 상	
감사	원 형 태	
	박 동 혁	

서명	
----	--

**안건 제1호**    **교원 인사**

**□ 총괄**

○ 2023. 3. 1.자 등 69명 추인 : 전임교원 신규 29, 승진 16 / 겸임교원 신규 24

구분			인원		비고
전임	신규	임상	19	29	교수 2, 부교수 2, 조교수 15
		비임상	10		교수 1, 부교수 1, 조교수 8
	승진	임상	14	16	교수 9, 부교수 5
		비임상	2		부교수 2
비전임	신규	겸임교원	24	24	
계			69		

**1. 전임교원, 신규 29명**

가. 임상 19명(교수 2, 부교수 2, 조교수 15)

NO	성명	소속	직급	임용기간			비고
1	이						
2	이						
3	박						
4	이						
5	최						
6	최						
7	신						
8	이						
9	홍						
10	서						
11	유						
12	조						
13	김						
14	장						
15	김						
16	손						
17	이						
18	김						
19	이						

서명



나. 비임상 10명(교수1, 부교수 1, 조교수 8)

NO	성명	소속	직급	임용기간			비고
1	김						
2	백						
3	정						
4	김						
5	송						
6	Robe						
7	Nichol						
8	Arturo						
9	Andrew						
10	Eunic						

2. 전임교원

가. 임상

NO	성명	소속	직급	임용기간	비고
1	서				학
2	황				학
3	이				학
4	전				학
5	김				학
6	전				학
7	손				학
8	남				학
9	천				학
10	신				학
11	이				학
12	강				학
13	김				학
14	김				학

나. 비임

NO	성명	소속	직급	임용기간	비고	
1	이				학	
2	강민영	기타인문대학원 영어교육과	교수	20 03 01	20 02 29	학

서명 김민영 (인)

**3. 비전임교원 : 겸임교원 신규 24명**

NO	성명	소속	직급	임용기간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11				
12				
13				
14				
15				
16				
17				
18				
19				
20				
21				
22				
23				
24				

**4. 추인**

교원 임용은 이사장과 총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

서명	기			
----	---	--	--	--

## 안건 제2호 대학 학칙 및 규정 개정

2021년 제4차이사회(11.12.)

- 대학의 조직, 학과, 정원, 직제, 인사, 보수 등과 관련된 학칙이나 규정의 제·개정은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정함
-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제·개정 후 이사회에서 추인하기로 함

### 1. 차의과학대학교 학칙(2023. 5. 8. 개정 승인)

#### 가. 개정 사유

-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재입학 절차 정비
- 간호학과 20명 학생정원 배정에 따른 정원 조정

#### 나.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7조 (재입학)</p> <p>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.</p> <p>② 재입학은 <u>퇴학 전 재적하였던 학과</u>의 동일학년 이하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 재입학을 희망하는 <u>학과가 폐지된</u>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재입학의 자격과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. 다만 학칙 59조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</p>	<p>제17조 (재입학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재입학은 <u>자퇴 또는 제적 전 재적하였던 소속의 동일학년 이하로</u>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 재입학을 희망하는 <u>학과(부) 또는 모집단위가 변경된</u>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	<p>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운영절차 변경 및 내용 정비</p>
	<p><u>부 칙 (2023.05.08. 공포)</u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

서명			
----	--	--	--



현행

[별표1] 입학정원

<단위: 명>

대 학	2023학년도			대 학	학 과	2022학	2021학	2020학
	학 과	전공	입학정원			년도 입학정원	년도 입학정원	년도 입학정원
간 호 대 학	간호학과			간호대학	간호학과	70	70	70
약 학 대 학	약학과			약학대학	약학과	30	-	-
미 래 융 합 대 학	생 명 과 학 부	세포·유전자재생의학 전공 시스템생명과학 전공 바이오식의약학 전공	394	건 강 과 학 대 학	보건복지행정학과	-	-	35
					보건의료산업학과	-	-	35
					AI보건의료학부	60	60	-
					스포츠의학과	50	50	50
	헬 스 케 어 융 합 학 부	디지털보건의료 전공 스포츠의학 전공 경영학 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공 심리학 전공 AI의료데이터학 전공		생 명 과 학 대 학	의생명과학과	40	40	40
					바이오공학과	45	45	45
				융 합 과 학 대 학	식품생명공학과	40	40	40
					데이터경영학과	47	47	45
					의료홍보미디어학과	47	47	45
					미술치료학과	35	35	34
상담심리학과	40	40	35					
차 오 름 교 양 대 학	-			-				
계			504	계	504	474	474	

개정(안)

<단위:명>

대 학	학 과	전공	2024학	2023학	학 과	2022학	2021학	
			년도 입학정원	년도 입학정원		년도 입학정원	년도 입학정원	
간 호 대 학	간호학과		100	80	간호대학	간호학과	70	70
약 학 대 학	약학과		30	30	약학대학	약학과	30	-
미 래 융 합 대 학	생 명 과 학 부	세포·유전자재생의학 전공 시스템생명과학 전공 바이오식의약학 전공	374	394	건 강 과 학 대 학	보건복지행정학과	-	-
						보건의료산업학과	-	-
						AI보건의료학부	60	60
						스포츠의학과	50	50
	헬 스 케 어 융 합 학 부	디지털보건의료 전공 스포츠의학 전공 경영학 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공 심리학 전공 AI의료데이터학 전공			생 명 과 학 대 학	의생명과학과	40	40
						바이오공학과	45	45
					융 합 과 학 대 학	식품생명공학과	40	40
						데이터경영학과	47	47
						의료홍보미디어학과	47	47
						미술치료학과	35	35
상담심리학과	40	40						
차 오 름 교 양 대 학	-		-	-				
계			504	504	계	504	474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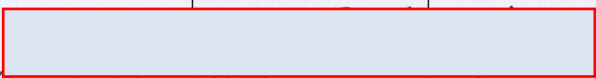
서명 ?

2. 의학전문대학원 학칙(2023. 3. 20. 개정 승인)

가. 개정 사유 : 선택 과목 이수 학점 변경(2학점 이상 → 3학점 이상)

나.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<p>제45조(학위수여자격)</p> <p>① 석사학위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1. 소정의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</p> <p>2. 이수 학점이 170학점 이상</p> <p>3. 모든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.00 이상</p> <p>4. &lt;삭제&gt;</p> <p>5. 선택 과목 <u>2학점 이상</u> 이수</p>	<p>제45조(학위수여자격)</p> <p>① 석사학위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1. 소정의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</p> <p>2. 이수 학점이 170학점 이상</p> <p>3. 모든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.00 이상</p> <p>4. &lt;삭제&gt;</p> <p>5. 선택 과목 <u>3학점 이상</u> 이수</p>	<p>선택 과목 이수 학점 개편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부 칙 (2023.03.20. 공포)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경과조치) 제45조 제1항 5호는 2023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한다.</u></p>	

서명	
----	--



### 3. 교원인사규정(2023. 5. 8. 개정 승인)

#### 가. 개정 사유

- 책임교육시수 내용 삭제(책임교육시수 규정과 중복)
- 기존 연구중점교원에 ‘중개연구특례교원’ 추가 등

#### 나.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<p><b>제3조 (교원의 종류)</b></p> <p>① 교육중점교원: 학생교육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<u>교원으로서 「책임교육시수 규정」에 의거하여 주당 9시간 이상 강의의 책임이 부여된 교원</u>을 말하며,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(이하 ‘강의전담교원’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</p> <p>② 연구중점교원 : 연구실적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<u>교원으로서 「책임교육시수 규정」에 의거하여 주당 4시간 이내 강의의 책임이 부여된 교원</u>을 말하며, 산업화연구를 수행하는 교원(이하 ‘산업화특례교원’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</p> <p>③ 임상중점교원: <u>진료 및 임상교육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교원으로서 「교원복무 규정」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으로부터 진료겸직을 허가받고 이를 수행하는 교원</u></p> <p>④ 산학협력중점교원: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등을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.</p>	<p><b>제3조 (교원의 종류)</b></p> <p>① 교육중점교원: 학생교육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<u>교원을 말하며,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(이하 ‘강의전담교원’)</u>을 포함한다.</p> <p>② 연구중점교원: 연구실적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<u>교원을 말하며, 산업화연구를 수행하는 교원(이하 ‘산업화특례교원’) 및 중개연구를 수행하는 교원(이하 ‘중개연구특례교원’)</u>을 포함한다.</p> <p>③ 임상중점교원: 「<u>교원복무 규정</u>」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으로부터 진료겸직을 허가받고 진료 및 임상교육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교원</p> <p>④ 산학협력중점교원: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등을 수행하는 교원&lt;삭제&gt;</p>	<p>책임교육시수 삭제 등</p>
<p><b>제7조 (정년)</b></p> <p>① 교원의 <u>계약 만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종료일(2월 말일 또는 8월 말일)</u>로 한다.</p>	<p><b>제7조 (정년)</b></p> <p>① ----- 정년은 ----- -----</p>	
<p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 (2023.05.08. 공포)</b> <b>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b></p>	

서명  태



#### 4.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인사규정(2023. 5. 8. 개정 승인)

##### 가. 개정 사유

- 교원별 책임교육시수 삭제(책임교육시수 규정과 중복)
- 기존 연구전담교원에 ‘산업화특례교원’ 추가

##### 나.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<p><b>제3조 (교원의 종류)</b></p> <p>① 교육전담교원: 학생교육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교원으로서 「책임교육시수 규정」에 의거하여 주당 12시간 강의의 책임이 부여된 교원을 말한다.</p> <p>② 연구전담교원: 연구실적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교원으로서 「책임교육시수 규정」에 의거하여 주당 6시간 강의의 책임이 부여된 교원을 말한다.</p> <p>③ 산학협력전담교원: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교원으로서 「책임교육시수 규정」에 의거하여 주당 6시간 강의의 책임이 부여된 교원을 말하며, 산업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을 포함한다.</p> <p>④ 외국어교육전담교원: 학생 외국어교육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원어민 교원으로서 「책임교육시수 규정」에 의거하여 주당 15시간 강의의 책임이 부여된 교원을 말한다.</p>	<p><b>제3조 (교원의 종류)</b></p> <p>① <u>교육전담교원: 학생교육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교원</u></p> <p>② 연구전담교원: 연구실적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교원을 말하며, 산업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(이하 ‘산업화특례교원’ 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</p> <p>③ <u>산학협력전담교원: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교원</u></p> <p>④ 외국어교육전담교원: 학생 외국어교육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원어민 교원&lt;삭제&gt;</p>	<p>* 교원별 책임교육시수 삭제 *산업화특례교원 연구전담교원 추가</p>
<신설>	<p><b>부 칙 (2023.05.08. 공포)</b>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

서명

5. 직제 규정(2023. 3. 20. 개정 승인)

가. 개정 사유 : 조직 변경에 따른 정보화실 신설  
(구 전산정보실은 2021.10.10. 삭제)

나.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4조(정보화책임관)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	현행과 동일	
<신설>	<u>제14조의1 (정보화실)</u> 정보화실은 대학교의 정보화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	정보화실 신설
	<u>부칙 (2023.03.20. 공포)</u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

서명	기				
----	---	--	--	--	--



**안건 제3호** 리스자금 한도계약[부속병원]

**1. 한도 계약 이유**

- 부속병원의 신규 및 노후교체 의료 장비를 리스자금 한도 계약 방식으로 확보하고자 함

**2. 계약 기관 : 롯데캐피탈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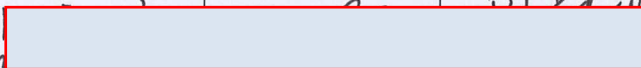
**3. 리스구매 한도 금액**

용도	구매 및 상환회계	리스구매 한도액
의료장비 확보	부속병원회계	30억원

**4. 리스 조건**

리스기간	지급방법	비고
5년	원리금 균등 지급	무담보 신용

**5. 기타 : 리스자금 한도계약은 교육부 허가사항은 아니며, 계약체결에 이사회 의결서가 필요함**

서명	
----	--